

의안
번호

4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2.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44호

다. 제출일자 : 2022. 11. 14.

라. 회부일자 : 2022. 11. 17.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신설(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09. 29. ~ 2022. 10. 19.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2021.12.21. 공포, 2022.6.22 시행)됨에 따라
- 현행 조례상 위원회 관련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여 조례의 목적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